

예 산 총 칙

2008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 · 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314,955,268 | 9,448,658 |
| 일반회계 | 283,462,787 | 8,503,884 |
| 일반회계 | 283,462,787 | 8,503,884 |
| 기타특별회계 | 31,492,481 | 944,774 |
| 상수도사업 | 2,403,308 | 72,099 |
| 하수도사업 | 1,374,838 | 41,245 |
| 수질개선 | 4,642,826 | 139,285 |
|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| 430,910 | 12,927 |
| 의료급여기금 | 533,072 | 15,992 |
|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| 517,760 | 15,533 |
| 기반시설 | 405,708 | 12,171 |
| 소득특화사업 | 6,088,102 | 182,643 |
| 농공단지조성사업 | 3,039,568 | 91,187 |
| 공영개발사업 | 2,105,942 | 63,178 |
|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 | 9,950,447 | 298,513 |

제 2 조 세입 ·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· 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당초 명시이월사업 변경내역은 별첨 "명시이월 변경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603,117천원으로 하며, 예비비의 40%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-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○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